

안동시 읍.면.동체육회 규약 표준(안)

제정 2020. 02. 05.

개정 2020. 11. 0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근거 및 명칭) ① 이 규약은 안동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 규약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체육회의 지회인 읍.면.동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② 읍.면.동체육회(이하“본회”라 한다)는 해당체육회명을 포함하여 “안동시○○○체육회”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,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20.11.03.]

제3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안동시 ○○○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
1.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
[개정 2020.11.03.]
2.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교류
3.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본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·주관
4. 직장운동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
5.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
6.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
7. 지역의 학교체육(청소년체육활동 포함),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
8.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
9.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10. 지역 체육인의 권익증진, 복지 및 교육관련사업
11. 지역체육역사 발굴, 확산 등 문화사업
12.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조직) ① ○○회원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본회의 단체는 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.[개정 2020.11.03.]

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“정회원단체”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 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.
- 2.“준회원단체”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.
- 3.“인정단체”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 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.

③○○회원단체는 본회의 지회로 하며, 본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[개정 2020.11.03.]

제6조(회비의 납부) 본회는 체육회 규약 제6조, 제7조에 따라 지회비를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) ①○○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[개정 2020.11.03.]

1.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2. 본회에 건의 및 소청 할 권리
3. 본회가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권리

4.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② ○○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진다.

[개정 2020.11.03.]

1. 본회의 규약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2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 회에 보고할 의무
3. 준회원단체는 제1항 1호 및 4호의 권리를 제한 받는다.
4. 본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

제8조(관리단체의 지정)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○○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 [개정 2020.11.03.]

1. 본회의 정관(또는 규약)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
 2. 60일 이상 ○○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[개정 2020.11.03.]
 3. ○○회원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 [개정 2020.11.03.]
 4.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
-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○○회원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. [개정 2020.11.03.]
-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「관리단체운영규정」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.
- ⑤체육회가「읍.면.동체육회규약」에 따라 ○○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회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11.03.]

제9조(가입 및 탈퇴 등)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○○종목단체는 시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○○회원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
- ③ 본회는 체육회 「가입 . 탈퇴규정」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. [개정 2020.11.03.]
- ④ ○○회원단체가 가입한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

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회는 이사회
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
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,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.

[개정 2020.11.03.]

⑤ 시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본회의 가
입·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.

제 3 장 대의원총회

제10조(대의원)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
2. 제5조 제3항에 따른 ○○○체육회의 장

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읍·면·동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
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
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
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총회의 기능)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본회의 해산 및 정관(또는 규약)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정회원단체의 가입, 강등 및 제명
3.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
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 사항

제12조(총회의 소집)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
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
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이 소집하여야 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3.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4.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,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,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-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.

제13조(의장)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4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5조(총회 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16조(임원의 불신임) ① 총회는 본회 임원(사무장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
-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대의원 3분의 2

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.

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 4 장 이사회

제17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4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사무장의 임명동의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8. 준회원단체·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
9. 기타 중요사항

제18조(이사회의 소집)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1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,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서면결의)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5 장 임 원

제22조(임원)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5인 이내
3. 이사 20인 이상 50인 이내(회장, 부회장, 사무장을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.
4. 감사 2인

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23조(회장의 선출)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.

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, 선거인단의 구성,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체육회의 규약 및 「회장선거관리규정」을 준용하여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

되, 안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(선거의 중립성) ①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2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.
3.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4.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.

③ 본회의 임·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와 시회원종목단체, 본회 및 본회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안동시체육회, 안동시종목단체, 본회 및 본회 회원단체의 다른 임·직원, 대의원,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개정 2020.11.03.]

④ 본회의 임·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(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) 3분의 1 또는 대의원(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)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.

⑤ 체육회는 본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5조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안동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,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26조(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선임) ① 부회장 및 이사(사무장을 제외한다)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직전까지 안동시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.

③ 임원은 본회를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%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2. 생활체육관계자(선수 출신을 제외한다)가 재적임원수의 30%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3. 교육계인사와 본회 읍·면·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%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4. 비경기인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재적임원수의 20%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5. 여성이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%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4항과 같이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.

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, 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,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.

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본회 임원(사무장을 제외한다)은 안동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,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읍·면·동장이 회장인 경우, 교육장 또는 교육지원국(과)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⑧ 안동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

⑨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(회장, 부회장 포함)의 20%를 초과 할 수 없다.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.

제27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
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
⑥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
⑦ ○○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○○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.

[개정 2020.11.03.]

제28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(사무장을 포함한다)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인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(사무장을 제외한다)은 안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, 사무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

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연임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, 사무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

-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 다만,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
-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.
-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
-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·시·군·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·시·군·종목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 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·시·군·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- 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·군 체육회의 명예회장,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.

제30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

를 제출해야 한다.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
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1. 본회 규약 제27조 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

2. 제30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

3. ○○회원단체 및 읍·면·동 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[개정 2020.11.03.]

③ ○○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지정을 안동시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 접수된 30일전부터 또는 본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, 부회장,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전부터 관리단체지정 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20.11.03.]

제31조(임원의 보수)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읍·면·동(○○○) 종목단체

제32조(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) ① 본회의 회원인 ○○종목단체는 읍·면·동종목단체와 체육동호인조직, 스포츠 단체군(群) 등으로 조직한다.

② 종목단체의 조직, 운영 등에 관해서는 「안동시회원종목단체규정」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33조(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) ① 종목단체의 임원은 안동시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
③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시 종목단체 및 다른 시·군종목단체, 도규모 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.

제 7 장 각종위원회

- 제34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**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,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35조(스포츠공정위원회)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.

1. 본회, 읍.면.동 ○○○회원단체의 규정 관리[개정 2020.11.03.]
 2. 본회, 읍.면.동 ○○○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[개정 2020.11.03.]
 3. 본회, ○○○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[개정 2020.11.03.]
 4. 인권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.
-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본회 회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.
 2.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1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.시.군종목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
 2.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(회원종목단체, 시.군체육회)의 임.직원인 사람
- ④ 이 밖에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체육회의 규약 및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」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36조(위원회의 운영 등)

-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가 설치하는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 8 장 재 산 및 회 계

제37조(재산의 구분)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
-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- 2. 부동산
 - 3. 기금
 - 4.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 - 5.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-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-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.

제39조(재원) ①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1. 회원단체 및 지회의 회비
 - 2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- 3. 기부금 및 찬조금
 - 4. 사업수익금
 - 5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 - 6. 공공단체의 지원금 . 보조금
 - 7. 기타수입금(임원 분담금 등)
- ② 임원(회장, 부회장, 이사)분담금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단, 사무장, 감사는 제

외한다.

제40조(잉여금의 처리) 본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
제41조(재산의 관리)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·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안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본회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2조(재산의 대여 및 사용)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안동시체육회, 안동시종목단체, 본회 및 회원단체의 임직원[개정 2020.11.03.]
2. 본회의 임직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(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)
3. 기타 체육회, 종목단체, 본회 및 본회회원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
[개정 2020.11.03.]

제43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44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안동시체육회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동시체육회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(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안동시체육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5조(회계감사)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.

② 본회는 읍·면·동종목단체의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
제46조 (본회의 감사·징계 등)

① 본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읍·면·동회원단체는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[개정 2020.11.03.]

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·면·동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, 사업,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·감사 할 수 있다.[개정 2020.11.03.]

③ 읍·면·동회원단체가 본회의 규약,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본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[개정 2020.11.03.]

④ 본회는 안동시체육회에서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·감사를 요구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본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·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·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동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본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·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.

⑦ 본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·감사 결과,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, 시·군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.

⑧ 제6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·감사 및 징계 요구는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 9 장 사무국

제47조(사무국)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둔다.

- ②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 사무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.
-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- ⑥ 사무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48조(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) 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0장 보 칙

제49조(해산)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안동시체육회장의 설립인가 취소(법인에 한정한다)로 해산한다.

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. 다만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.

제50조(규약의 변경)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,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안동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본회의 규약은 안동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51조(규약 제·개정) ① 본회는 이 규약에 따라 당해 본회의 정관(규약)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(규약)을 제·개정한다.

③ 본회의 인사, 복무, 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·개정 할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직제규정은 해당내용을 문서(전자문서 포함)를 통해 안동시체

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본회의 정관(규약) 및 제 규정(사무국 규정 포함)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2조(정관(규약)의 해석 등) ① 안동시체육회의 읍.면.동체육회 규약은 본회의 정관(규약)에 우선하며, 본회 정관(규약)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정관(규약)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동시체육회의 규약을 따라야 한다.

② 본회가 안동시체육회 규약, 이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안동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3조(제한사항) 본회가 안동시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동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(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)하거나 안동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54조(경영공시)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, 예산집행내역, 외부평가, 감사결과와 그 외 본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① 이 규약 시행 전 (구)읍.면.동체육회 규약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이 규약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약 시행 당시 (구)읍.면.동체육회 규약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

③ 부칙 제1항에 따라 이미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2년 12월까지(정기총회일 전날까지)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. [개정 2020.11.03.]

부 칙 <신설 '20. 2. 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안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신설 '20. 11. 0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안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